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개최일시	2018. 1. 17(수)16:00~18:3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3명)	김상택(기획처장), 김혜린(동아리연합회 회장), 도재형(총무처장), 류한영(재무처장), 문지영(대학원 학생회장), 신혜슬(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안현주(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이공주복(교무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정한경(학부 총부학생회장), 차안나(학부 총학생회장), 최성희(학생처장), 최혜련(예산팀장)		
불참자 (0명)			
안건	'18년 예산(안)심의 및 등록금 책정(안)		
내용	<p>■ 개회</p> <p>위원장은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회하다.</p> <p>■ 회의내용</p> <p>1. 회의록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1차 등심위 회의록 최종 확인 후 서명을 부탁하다. 위원들이 전원 1차 회의록에 서명하고 논의사항으로 넘어가다. <p>2. 논의사항</p> <p>가. 참관인 허용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학생회장은 위원장에게 1차 회의에서 차기회의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참관인 허용 관련 안건이 2차, 3차 등심위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참관인 허용 관련 안건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다. 전체적이고 큰 문제라서 이번 회의에 다루기 어렵다고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언제 참관인 허용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은 전체 구성원 의견 수합 이후 내년, 내후년의 등심위에서 다 		

	<p>루려 했다고 말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장은 공식적인 내규에 없는 내용이어서 전체구성원에게 공포 후 참관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지금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다. <p>- 총학생회장은 학생위원들은 1차 등심위 회의에서 참관인 허용 관련 논의를 차기 등심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이해하고 안건을 넘긴 것이라고 말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논의한다고 말했다면 구제적인 논의 계획과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다.</p> <p>- 위원장은 어느 기구에서 참관인 허용 관련 논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다.</p> <p>- 총부학생회장은 타학교 등심위 회의에서 등심위 참관인 허용 안건을 다루어 참관인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다. 작년 12월 27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차기 총학생회장 참관 허용 안건을 다루어 참관이 허용된 사례와 같이 등심위 참관인 허용은 등심위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라고 말하다.</p> <p>- 총무처장은 등심위 내규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다.</p> <p>- 동아리연합회장은 내규야말로 등심위 내부에서 결정해야하는 사안이 아닌지 질문하고, 내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묻다.</p> <p>- 총무처장은 일반적으로 규정 개정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규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교무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말하다.</p> <p>-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은 학생위원이 6명이나 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의 참관인 허용 안건을 다루는 회의체에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다.</p> <p>- 총무처장은 등심위는 예산과 결산을 등록금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 구성원이 관련 있는 회의체라고 말하다. 따라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다. 대학평의원회의 참관인 허용은 총학생회장 임기에 관련된 사안이고, 원칙적으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참관인을 허용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하다.</p> <p>- 재무처장은 대학평의원회는 차기 위원에 대한 참관인 허용에 관련된 사항이고 등심위는 일반 참관인 허용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다른 논의라고 말하다.</p> <p>- 총무처장은 등심위가 등록금만 심의한다면 학생의견을 듣고 빠르게</p>
--	--

	<p>논의할 수 있지만, 교수, 교직원 모두 관련 있는 사안을 심의하므로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연합회장은 총부학생회장이 대학평의원회의 예시를 든 것은 차기 위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의 내부의 규칙은 회의체 안에서 정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고 본다. 참관인 허용은 법으로 금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다. 이것은 등심위에서 정하든 학교에서 정하든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하다. 모든 학교 구성원과 관련 있는 회의체인 만큼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참관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장은 타학교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연합회장은 다른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참관인 불허가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이 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하더라도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위원장에게 운영방식에 관한 안건은 차기에서 논의하고 지금은 예산, 등록금 안건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저번 회의에서도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갔던 것인데 지금 논의되지 못한다면 학생위원회가 전혀 배려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참관인 허용 안건은 지금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이는 안건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학생회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안건이라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말하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 문제 해결 절차 없이는 안건을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다. 참관인 허용은 학생위원회의 요구안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은 학생위원회들이 등심위 참관인 허용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해당 부처에 발의를 하고 규정위원회, 교무위원회를 거쳐 논의를 진행하라고 말하다. 당위성이 인정이 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하다. 절차를 열어두는 것으로 참관인 허용 관련 안건을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참관인 허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1차 등심위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은 개정을 요청하는 학생위원회들이 참관인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참관인 허용이 가지는 장점 등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참관인 허용 때문에 자유로운 발언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참관인이 있을 경우에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다. 참관인이 허용된다면 참관인들이 등심위 위원만큼 등심위 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참관인의 회의내용 이해도는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다. 등심위 장내에서 다루는 내용은 학교의 대표적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은 단어 선택이나 표현 방식 등 부차적인 문제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참관인의 반응을 의식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다. 학생위원회들이 참관인 허용 안건을 발의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격, 어떤 범주, 어떤 방식으로 참관인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처장은 참관인 허용보다도 회의록을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장은 참관인이 발언도 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위촉될 필요도 없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1차 회의록의 수정 과정이 지난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회의록으로는 충분하게 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하다. 회의록을 속기록 수준으로 세세하게 작성하게 하자고 1차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집행이 안되는 상황인데, 회의록을 통해 회의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참관인 허용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은 회의 중 오고간 세세한 내용보다는 결론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장은 위원장에게 참관인 허용 여부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을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은 당장 표결하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회의록에 남겨서 발의의 여지를 남겨두자고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다. - 총무처장은 학생처를 통해서 재무처에 발의하라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학생처장이 아니라 재무처장이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다. 이것이 발의되었을 때 교수나 직원 분들께도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논의과정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텐데 재무처는 어떻게 이를 처리할 생각인지 질의하다. - 재무처장은 규정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어떠한 발의가 있다면 논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다. - 총학생회장은 규정의 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빠지는 것이냐고 질의하다. - 재무처장은 논의라는 것이 대면 논의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은 규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발의자를 초청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고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개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정도는 담보되어야 학생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다. - 학생처장은 학생위원의 주장은 발의안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발의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규정위원회는 어떤 범위의 규정을 정하는 위원회인지에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규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교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 위원장은 학생처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발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안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그렇게 마무리할 경우 내년 등심위 회의에서 참관인 허용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장은 1학기 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발의만 하고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연합회장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의되는 내용이지만, 교직원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교무회의는 교수만 있는 곳이라고 말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요구를 했을 때 학생들을 제외하고 학교가 논의한 결정사항을 전달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하다. 토론을 할 계획이라면 학생들이 포함된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발의의 일반적 절차를 설명하다. 국회의원에게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발의자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참관인 허용을 위한 것도 일반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연합회장은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지만, 교무회의는 교수밖에 들어갈 수 없음을 들며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하다. 학생들이 교무회의와 같은 회의체에 권한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유감을 표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학생회장은 등심위 규정을 교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논의가 전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므로 회의록에 기록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은 참관인의 자격, 참여범위, 참여방법 등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등심위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참관인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이지 절차를 안내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으며, 차후 요청했을 때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인지 질문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참관인 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에 대한 보완책을 포함한 의견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예산 심의 안건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하다.

나. '18년 예산(안) 의결

- 총학생회장은 추가적으로 받은 예산 세부내역 자료가 저번에 받은 자료를 표로 정리한 수준이라고 말하다.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다. 3차 등심위에서도 이정도 자료를 보고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하다.
- 재무처장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는데, 동일한 자료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예산 세부내역 말고도 추정결산, 외부업체임대료, 적립금 사용내역 등의 요청한 자료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다. 작년도 예산 지출부에 비교했을 때도 부진한 내용이라고 말하다. 타학교만큼의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추가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다.
- 재무처장은 결산만큼의 자료는 결산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다. 현시점에서 결산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은 타위원회 및 내부 보고 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임을 말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는 왜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은 타위원회 및 내부 보고 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이며, 예산서 전체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세부적인 자료를 왜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다.
- 예산팀장은 타위원회 및 내부 보고 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임을 말하고,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다.
- 예산팀장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말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는 예산이 2월 말에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중순에서 이정도 수준의 자료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등심위 등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야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그전에 말씀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학생회장은 이것이 양해나 이해의 건이 아니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텍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타학교에서 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정도의 자료는 노력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학생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하다. 작년, 재작년 등심위와 각종 공동행동에서 등심위 요구안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이전에도 말했던 요구안을 노력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다. 학생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보장된 것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은 학생위원들이 책자수준의 자료를 요청하는데, 예산서 전체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예산 심의에서 책자 수준의 자료를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은 회계자료의 특성상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예산서 전체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재무처 및 관련 부처가 학생위원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회의 7일 전에 제공하고, 요청받은 자료는 관, 항, 목까지 제시하는 등 상세하게 제공하고, 등록금책정 관련 자료는 사전에 제공하고, 추가로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시기를 확답하며 정해진 시기에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학생 측에게 제공하는 자료의 제공 방식, 시기, 상세한 정도를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제공 관련 합의서에 위원들이 서명할 것을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은 관, 항, 목까지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학생회장은 관, 항, 목까지의 제시한다는 조항은 최소한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은 회계자료의 특성상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

	<p>서에 서명이 어려움을 말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7일 전에 제공할 수 없는 자료까지 무조건 제공한다는 항목은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할 수 없으나, 합의서 관련 논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될 것임을 말하다. - 총무처장은 의결을 하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다. - 재무처장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문을 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합의서 내용을 학생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예산팀에서 접수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다. - 재무처장은 학생위원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각 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료제공시기를 확답할 수 없다고 말하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덧붙이다. - 총학생회장은 상세한 자료제공이 담보되지 않으면 등록금과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고 말하다. - 재무처장은 합의서를 접수하겠다고 말하다. - 총학생회장은 접수가 아니라 서명을 요청드렸다고 말하다. - 학생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단체 및 기관과도 관련된 합의서이기 때문에 서명은 어렵다고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다른 단체나 기관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책임 전가적인 발언 때문에 합의서를 들고 온 것이라고 말하다. 2차 등심위 회의에서 특정 기관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온 것과 같이, 특정 기관 담당자의 발제를 들어볼 수 있게 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단정적인 합의서를 가져오게 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다. 등심위 관련 요구안은 지속적인 요구안이었고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다. - 재무처장은 자료제공 관련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지켜질 것이라고 말하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연합회장은 차등책정 근거를 요청하자 이러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료는 필요 없다고 말하다. 학교가 학생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이행해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자료제공 관련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고 말하다. 그러므로 회의록과 합의서는 동일하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학생회장은 내용에 동의하면 서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다. 학생측 요구안이 등록금 인하 입학금 폐지 등인데 이것에 대해 토론할 만큼에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다. 따라서 합의서는 최소한의 요구인데, 이조차 서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학생위원회가 등심위에 임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호간의 의견을 좁혀 나가야함을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구조상 표결을 하면 학생위원회의 의견이 수용될 수 없는 구조인데 자꾸 표결을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은 7일내의 자료제공과 같이 지킬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서명할 수 없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처장은 이 사안은 대기업 총수가 말해도 수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장은 대기업 총수라면 회의 날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은 대기업 총수를 운운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다. 등심위가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에 책임지지 않음을 지적하다. 총학생회장은 학생측의 요구안이 법인책무성 강화를 통한 등록금 인하와 산정근거가 없는 입학금 즉각 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은 합의서 내용을 “재무처 및 관련 부처는 학생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빨리 제공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학생회장은 그와 같은 약속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연합회장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공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로 합의를 한다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언제나 달라

	<p>질 수 있다고 말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학생회장은 학생 측 요구안에 대한 수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다. - 총무처장은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학교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법인책무성 강화를 통한 등록금 인하와 입학금 폐지를 학생 측이 요구했으나 법인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면 학교가 정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 정시자율전공생 등록금 책정에서도 학생 측은 인문사회계열 정도의 등록금 책정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하다. 이는 등심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하다. - 총무처장은 인문사회 수준의 등록금을 정시자율전공생에 적용한다면 1학년과 2학년 등록금도 차등 책정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모든 차등책정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다. - 총학생회장은 학생위원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등심위에 더 이상 임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다. <p>학부 학생위원은 학생 측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등심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퇴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학생회장은 기타학생경비와 학생지원비의 차이를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학생지원비는 동아리지원과 같이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고 기타학생경비는 운영비처럼 학생 관련한 기타경비라고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운영비는 단과대학별로 배정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단과대학별로 운영비를 배정하며, 각 단과대학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고 설명하다. -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명이 찬성하고 대학원 학생회장이 기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18 예산안을 의
--	---

결하다.

• 의결사항

- 교비회계 '18년도 예산(안)

다. 등록금 책정(안)

- 위원장이 재무처장에게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다.

- 재무처장은 학부 입학금 16%인하와 수업료 동결, 대학원은 입학금 수업료 모두 동결임을 말하다. 또한 정시통합선발입학생(이하 호크마교양대학)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권고한대로 해당 입학생이 1학년말에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의 1학년 입학정원과 등록금액의 가중평균으로 책정하였다고 설명하다.

- 총무처장이 학생위원들이 등록금책정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말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다.

- 예산팀장이 호크마교양대학은 정시통합으로 선발하며 1학년 입학할 때에는 소속 학과가 정해져있지 않음을 말하다. 이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상이한 계열 통합 시 각 학과 간 가중평균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시통합선발입학생이 전공으로 선택 가능한 학과기준 1학년 입학정원과 등록금액의 가중평균으로 등록금을 계산하였다고 설명하다.

- 총무처장이 학생위원들이 지적한대로 1학년은 교양과목만 듣는데 이것이 규칙에 맞는지를 질문하다.

- 학생처장은 1학년이 교양과목만 듣는 것이 아니며, 선택에 따라 전공 과목도 들을 수 있음을 설명하다. 신산업융합대학 정시입학생에 대해 호크마교양대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공수업을 1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음을 말하다.

- 재무처장이 공대수업의 경우 학년별 수강과목을 디자인해야 해서 1학년 때부터 전공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경제학과의 경우에도 1학년 학생들이 전공수업을 듣고 있음을 덧붙이다.

- 위원장은 자연대의 경우를 설명하며 1학년이 일반물리학 전공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실험실습비가 다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다.

- 총무처장이 호크마교양대학의 경우 학사개별의 중요성을 언급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호크마교양대학은 담임교수제로 입학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며, 세미나도 운영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재무처에 다음 등록금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이 신산업융합대학 등록금인하안에 대해 설명하다. 국가장학금2 수혜를 위해 등록금을 인하해야하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신산업융합대학 소속 2개학과(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의 등록금을 각 2.4%인하하는 안을 설명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등록금이 국가장학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황임을 말하며 등록금 책정의 어려움을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은 학부의 계절학기 수업료도 동결이며, 학점등록금은 정규등록금에 따라 비율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인하하는 2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동결이며, 대학원의 연구, 논문, 교과목등록도 모두 동결로 책정하였다고 설명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이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를 물어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이 장학재단에서 방침이 바뀌었는지를 질문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은 작년과 달리 모집정원 기준으로 공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 판정방식도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방식으로 산정하였을 때 앞서 말한 2개 학과에 인하요인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 입학금 인하계획이 없는지 질문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처장이 교육부에서 현재 학부입학금 인하에 대해서만 방침이 나온 상태이며, 학부입학금 인하만으로도 학교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대학원 입학금 인하까지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본교의 장학금 현황에 대해 질문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이 학부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받아 소득분위 0~6분위까지 100%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7~8분위까지도 40%를 지급하고 있어 등록금 감면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또한 대학원도 장학금을 늘리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음을 덧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명이 찬성하고 대학원 학생회장이 기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18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

	다.					
<p>•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등록금 책정(안) - 학부 입학금 16%인하, 수업료 동결 -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 - 호크마교양대학 등록금 책정 - 신산업융합대학 소속학과(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 수업료 2.4% 인하 - 학부 계절학기 및 학점등록금(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 2.4% 인하) 동결 - 대학원 계절학기 및 교과목 등록금,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 동결 						
<p>■ 폐회</p> <p>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p>						
<p>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p>						
	2018년 1월 17일					
확인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공주복	이공주복	위 원	안현주	안현주
	위 원	김상택	김상택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김혜린	김혜린	위 원	정한경	정한경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차안나	차안나
	위 원	류한영	류한영	위 원	최성희	최성희
	위 원	문지영	문지영	위 원	최혜련	최혜련
	위 원	신혜슬	신혜슬			
작성자	총부학생회장 정한경 예산팀 안예지 (안예지)					